

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
------	-----

신청인 (양도자)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 (전화번호 :)	

양도 주택	④ 구분 [] 장기임대주택 []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[] 장기어린이집 [] 일반주택			
	⑤ 소재지			
	⑥ 주택면적(㎡)	⑦ 토지 면 적(㎡)	⑧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	⑨ 국민주택 여부
	⑩ 취 득 일		⑪ 양 도 일	

[] ⑫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
[] ⑬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

구 분	장기임대주택 등 내역									
	⑭ 소재지	⑮ 취득일	⑯ 기준호수 임대기간	⑰ 임대 등 개시일	⑱ 공제기간	⑲ 주택임대 기간	세법상 사업자등록		시군구청 임대등록	
							⑳ 등록일	㉑ 등록호수	㉒ 등록일	㉓ 등록호수
㉔장기임대 주택										
㉕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										
㉖장기 어린이집										

구 분	임차인		임대료		임대기간		
	성명	생년월일	보증금	월세	개시일	종료일	기간
최초 임대							
2회 임대							
3회 임대							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7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신청인 제출 서류	1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.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※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 3.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2. 토지·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. 토지·건축물대장 등본 4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 성 방 법

- ④란 : 양도한 주택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임대주택란에,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란에, 같은 항 제8호의2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어린이집란에, 같은 조 제4항의 일반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란에 [V]표시로 구분합니다.
- ⑧란 : 2011.10.14. 이전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구「임대주택법」 제6조)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⑫란 :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,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, 장기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[V] 합니다.
- ⑬란 :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,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, 장기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[V] 합니다.
- ⑯란 : 사업자등록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등록 이후 기준임대 호수 이상을 임대한 기간을 적습니다.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.
- ⑰란 :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,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.
- ⑱란 : ⑯란의 주택 임대기간 중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3항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7조에 따라 주택 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적습니다.
- ⑳란, ㉑란 :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.
- ㉒란, ㉓란 :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.
- ㉔란, ㉕란, ㉖란 :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㉔란에 소재지 등을 적고,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㉕란에 소재지 등을 적으며,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㉖란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.
- ㉗란 : 장기임대주택 또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일반주택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.(초과하는 경우 별첨 가능)

210mm×297mm[백상지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